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43
----------	-------

발의연월일 : 2026. 5. 21.

발 의 자 : 강경숙 · 김선민 · 서왕진
차규근 · 정춘생 · 김준형
백선희 · 박은정 · 황운하
김재원 · 이해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안건만 기재하고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등록금 책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

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기 위하여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대학의 장이 회의록 공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1항, 제12항 신설 및 제15항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발언 요지”를 “전체 발언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에도”를 “제13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0항의”를 “제11항의 회의록 제출 방법·절차, 제13항의”로, “산정방법 및 제11항의”를 “산정방법, 제12항 및 제14항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⑪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제1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

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④ ~ ⑥ (생 략)</p> <p>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p> <p>⑧ (생 략)</p> <p>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u>발언 요지</u>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p>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p> <p>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 <p>⑧ 제5항에----- ----- -----.</p> <p>⑨ (현행 제8항과 같음)</p> <p>⑩ ----- -----<u>전체 발언 내용</u>----- ----- ----- ----- ----- ----- -----</p>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⑩ (생 략)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⑪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제1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⑬ (현행 제10항과 같음)

⑭ 제13항에도-----

⑮ -----

· 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
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
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1항의 회의록 제출
방법·절차, 제13항의-----
-----산정방법, 제12항 및
제14항의-----

-----.